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수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손해평가사 자격의 대여·알선 금지,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설치 및 압류금지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

*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(2020.2.11.일 공포, 2020.8.12. 시행)

나.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리·감독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 및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공고 방법 등 시행령 정비

3. 주요내용

가. 실효성이 낮은 일간신문 공고방법 폐지(안 제12조의2)

- 현행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개정

나. 법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개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(안 제12조의9)

- 자격증 대여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,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등

다.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 수급자의 압류금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의 신청방법 등(안 제12조의10)

1)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지급신청서에 해당 계좌번

호를 기재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

- 2) 금융기관의 폐업, 영업정지, 정보통신상 문제 등으로 보험금 이체가 불가능 할 경우 현금 지급 가능토록 단서 규정

라. 보험금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액수 설정(안 제12조의11)

- 1) 농어업 총수입에서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분의1로 정함
- 2) 다만, 재이양, 재직파, 재파종 등 농어업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은 전액

마. 농어업재해보험의 사업 관리·감독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추가(안 제22조의3)

-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무를 추가, 보험사고 발생 현황분석 및 보험상품 개선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6. 10. ~ 7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인터넷 홈페이지 등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9부터 제1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9 (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) ① 법 제11조의5제2항·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손해평가사는 지체 없이 손해평가사자격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평가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·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가 확정된 때

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10 (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)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금융기관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가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면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 한다.

제12조의11 (보험금의 압류금지) 법 제12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”란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재이양, 재직과, 재과중, 재정식 등 농어업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22조의3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무

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의3]

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(제12조의9 관련)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1.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	법 제11조의5 제1항 제1호	자격취소		
2.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	법 제11조의5 제1항 제3호	자격취소		
3.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	법 제11조의5 제1항 제5호	자격취소		
4.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	법 제11조의5 제1항 제2호	업무 정지 1년	자격취소	
5.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	법 제11조의5 제1항 제4호	업무 정지 1년	자격취소	
6.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람	법 제11조의6 제1항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1년	업무 정지 1년
7.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은 사람	법 제11조의6 제1항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1년	업무 정지 1년
8.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(이하 “이해관계자”라 한다)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사람	법 제11조의6 제1항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6개월
9.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손해평가를 한 사람	법 제11조의6 제1항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6개월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2(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의 실시 등) ① (생 략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 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<u>전국을 보급지역으</u> <u>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</u> <u>및 인터넷 홈페이지에</u> 공고하여 야 한다. 1. ~ 6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의2(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의 실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인터넷 홈페이지 등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12조의9 (손해평가사 자격 취소</u> <u>및 업무정지 기준) ① 법 제11</u> <u>조의5제2항 · 법 제11조의6제2</u> <u>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</u> <u>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2</u> <u>의3과 같다.</u>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평 가사 자격이 취소된 손해평가사 는 지체 없이 손해평가사자격증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 납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평가사자격 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이

<신 설>

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·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가 확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10 (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) ① 법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신 설>

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금융기관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가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면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 한다.

제12조의11 (보험금의 압류금지)
법 제12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”란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

제22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· ② (생 략)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(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한다. 다만, 재이양, 재직파, 재파종, 재정식 등 농어업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</u> 제22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· 감독에 관한 사무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96